

[일련번호: 1]

경기도체육회

주 의 · 개 선 조 치

[제 목]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성남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성남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6호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과 성남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등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을 운영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근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27조(담당업무)와 성남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25조(복무관리)제3항에 따르면 지도자의 인사정보, 지도활동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 되었다.

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미이행

성남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까지 하도록 독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나. (행정)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미준수

성남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라 지방체육회 생활체육 업무에 필요한 경우 단체별 *명 이내로 배치 할 수 있고 `**년 *월부터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명을 추가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행정지원 인력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성남시체육회장은

정기종합감사에서 발견된 2가지 부적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미이행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이 조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성남시청 주무부서 및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여 본회 ○○○○팀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 (행정)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미준수

대한체육회「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과 성남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25조(복무관리)에 따라 행정지원 인력을 *명 이내로 재배치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 ○○○○팀으로 재배치한 행정지원 인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구매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속 기 관] 성남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성남시체육회는 ****~****년도 경기도체육회 ○○○○○○ 사업에 선정되어 성남시 내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학교에 훈련용품을 지원 하는데 **건(**,**,**월)의 물품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성남시체육회 「정관」과 「회계규정」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사업별 보조금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등에 따라 수의분할 계약집행 기준에 맞게 분할계약을 금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성남시체육회는 ****~****년도 체육진흥공모 훈련용품지원 사업운영에 있어 훈련용품 구매에 있어 학교에서 업체 견적서를 받아 개별 구매하는 등 분할계약을 실시하고 계약서를 기타 증빙서류를 대체하여 생략하는 등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 000000 훈련용품 지원에서 총 사업비 **,***천원 중 용품지원형으로 **,***천원을 지역 내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0000, 000, 000, 000, 000)에 훈련용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

본회는 성남시체육회에 `**,**.**.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00000-**)을 받아 `**,**.**.일자로 보조금을 교부(본회 00000-****)하였고 `**,**.**.일자에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계약담당 기관이 받아야하는 견적서를 지원 받을 *개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 받아 제출된 견적서를 증빙으로 [표1]과 같이 보조금을 *회로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C용품업체는 *건(**,***천원)의 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도 *번으로 분할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 000000 훈련용품 지원에서 총 사업비 **,***천원을 학교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0000, 0000, 000, 000)에 용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

본회는 성남시체육회에 `**,**.**.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00000-****)을 받아 `**,**.**.일자로 보조금을 교부(본회 000000-****)하였고 `**,**.**.일자에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계약담당 기관이 받아야하는 견적서를 지원 받을 *개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 받아 제출된 견적서를 증빙으로 [표1]와 같이 보조금을 *회로 분할하여 구매하였고 사전에 자격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계약서를 생략하고 증빙서류로 대신하였다.

또한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추정금액¹⁾ 2천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하는 경우는 공고를 내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하여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천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업체를 분할하여 2천2백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하여 구매하였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정의)2호

**** 000000 훈련용품 지원에서 총 사업비 **,***천원을 학교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000, 000, 000, 000, 0000)에 용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

본회는 성남시체육회에 `**,**.**.***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00000-****)을 받아 `**,**.**.***일자로 보조금을 교부(본회 000000-****)하였다.

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계약담당 기관이 받아야하는 견적서를 지원 받을 *개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 받아 제출된 견적서를 증빙으로 [표1]와 같이 보조금을 *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

*개 업체를 통해 계약하였지만 사격과 같은 특수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목임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시기에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표1] **~**** 000000 훈련용품지원 계약현황**

사업명	집행액(원)	목적	지출일자	거래처	계약서 작성
**** 000000	*,***,***	농구(000)	**.*.*	A용품업체	미작성
	*,***,***	사격(0000)	**.*.*	B용품업체	미작성
	*,***,***	태권도(000)	**.*.**	C용품업체	미작성
	*,***,***	태권도(000)	**.*.**	C용품업체	미작성
	*,***,***	레슬링(000)	**.*.**	C용품업체	미작성
**** 000000	*,***,***	야구(000)	**.*.**	D용품업체	미작성
	*,***,***	태권도(000)	**.*.**	E용품업체	미작성
	*,***,***	력비(0000)	**.*.**	F용품업체	미작성
	*,***,***	야구(0000)	**.*.**	G용품업체	미작성
**** 000000	*,***,***	배구(000)	**.*.**	H용품업체	작성
	*,***,***	농구(000)	**.*.**	I용품업체	작성
	*,***,***	농구(000)	**.*.**	A용품업체	작성
	*,***,***	양궁(000)	**.*.**	J용품업체	작성
	*,***,***	사격(0000)	**.*.** **.*.*	K용품업체	작성

[조 치 사 항] 성남시체육회장은

성남시체육회 회계규정을 정비하고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분할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정관 개정 미흡

[소 속 기 관] 성남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성남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체육회장과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7조(권리와 의무)¹⁾ 및 제54조(정관의 변경)²⁾에 따르면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³⁾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은 ****년 최초 제정되어 ****년 **월까지 *회 개정되었다가, ****년 **월 **일 지방체육회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1) 「성남시체육회 정관」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②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성남시체육회 정관」 제54조(정관의 변경)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① 시·군체육회는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새로 제정 되었고 이후 ****년 *월 **일과 ****년 *월 **일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체육회는 ****년 *월 **일 제정된 정관을 현재까지 개정 내역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체육회는 정관 제54조(정관의 변경)제2항4)에 따라 본회에 정관 개정에 따른 검토 요청을 2회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성남시체육회장은

체육회 정관 제7조, 제54조 및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성남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관을 개정 후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
- 4) 「성남시체육회 정관」 제54조(정관의 변경)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성남시체육회 00000-****(****.***.**) 「성남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검토 협조 및 규정 개정 안내」
경기도체육회 000000-****(****.***.**) 「성남시체육회 정관(개정) 검토의견 알림」
성남시체육회 00000-****(****.***.**) 「성남시체육회 정관 개정 재검토 요청의 건」
경기도체육회 00000-****(****.***.**) 「성남시체육회 정관 개정 검토의견 회신」

[일련번호: 4]

경 기 도 체 육 회

개 선 조 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소 속 기 관] 성남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성남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성남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연맹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정관 제3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규정인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는 ① 학교체육위원회, ② 생활체육위원회, ③ 경기력향상위원회, ④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⑤ 여성체육위원회, ⑥ 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하지만 감사기간 확인한 결과 체육회는 6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학교체육위원회』와 『경기력향상위원회』만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위원회』와 스포츠클럽 육성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체육위원회』, 『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경기도체육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로, 체육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8조(체육정책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별도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구성·미운영 중이다.

[조 치 사 항] 성남시체육회장은

정관 제38조(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5]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경영공시 미이행

[소 속 기 관] 성남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성남시체육회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성남시체육회 정관 제58조(경영공시)에 의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성남시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남시체육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에 명시된 공시항목들을 게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년 **월 **일까지 성남시체육회의 홈페이지 내에 ****년도,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공시와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하였을 뿐,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조 치 사 항] 성남시체육회장은

정관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